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정리

제12판 정오표

(2025년 07월 30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5년 7월 17일 발행된 “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정리” 제12판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WILLBES

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 제12판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5년 07월 30일 기준)

2025년 07월 17일 발행된 **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**에서 추가된(보완) 내용과 수정사항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페이지 [위치]	수정사항	수정내용
p. 152 **첫 번째 판례박스 內 밑에서 1~2째줄**	**최근 판례** 甲이 A를 살해한 후 A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, 甲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하고 乙에게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, 乙과 丙은 그 요청을 수락하여 甲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고 丙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乙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여 甲을 위한 도피 · 은닉 장소를 마련해준 사건에서 ①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'도피하게 하는 행위'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,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 ② 한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,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,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. ③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(대판 2023.10.26. 2023도9560). → 乙과 丙의 범인도피행위에 대하여 甲의 범인도피교사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임. 法行43 Case ※ 판례는 乙과 丙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였고, 甲에 대하여는 방어권남용이 아니므로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음.	**내용 수정 및 내용 추가**